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040호
2. 발 의 자 : 유형찬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8. 14.
4. 회부일자 : 2023. 8. 21.

II. 제안이유

- 최근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 등으로 인해 학생을 비롯해 교사·학부모의 불안감 상승은 물론 2차 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바, 화장실 및 탈의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근원적 예방책 마련 필요.
- 특히,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 시설 및 장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의 빈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조문을 개정하여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 기대.

III. 주요내용

- ‘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.

- 교육감의 역할인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과 관련해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‘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’ 을 상위법 개정에 근거해 규정함(안 제5조의2)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3. 입법예고(2023. 8. 24. ~ 8. 28.) 결과 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040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 전국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¹⁾ 특히 교내 화장실 등 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.²⁾
- 한편 국회에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20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관리자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였고³⁾

이에 따라 금년 7월 11일 대변기 칸막이(출입문은 제외)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(7월 21일 법 시행일 이후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).⁴⁾

1) 보도자료

- 고교생이 교사 불법 촬영...학교 측 대응하는 사이 또 촬영(채널A, 2023.6.23.)
- "성 욕구 못 참아"...불법 촬영 재판 중 또 학교 침입해 찍어댔다(SBS뉴스, 2023.6.9.)
- 학생·교직원 불법 촬영...자유롭게 학교 드나든 '시설 보수 직원'이 범인(MBC뉴스, 2022.10.11.)

2) 보도자료

- 학교 수영장 여자 탈의실서 불법촬영한 남학생...경찰 수사중(중부일보, 2023.6.19.)
- 고교 교사가 근무지 여자화장실서 제자 신체 불법 촬영 '입건'(중앙신문, 2023.5.18.)

3) 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
4)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23. 7. 11.>

5의3. 대변기 칸막이(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)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. 다만,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

- 불법촬영 범죄가 고도화·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면서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

학생, 교직원, 보호자 등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.

나. 조문별 검토

1) 제명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」로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

최근 불법촬영기기 수준의 발달로 불법촬영 예방 장소를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제명 수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
2) 정의에 대한 검토(안 제2조)

- 안 제2조제3호에서는 “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”을 “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, 안심거울,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”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⁵⁾ 화장실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스크린⁶⁾과 안심거울⁷⁾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감안할 때,⁸⁾ 안 제2조제3호에서 불법촬영의

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5) 보도자료: 창녕군, '여성 범죄 예방' 공중화장실 안심거울·안심스크린 설치(뉴스프리존, 2023.6.23.)

6) 화장실 칸막이 사이를 막아 불법 촬영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함.

7) 화장실 출입구에 거울(반사경)을 부착해 보행자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, 범죄심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.

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해 예방시스템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.

3)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에 대한 검토(안 제5조)

-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불법촬영 점검 계획의 대상을 “화장실”에서 “화장실 등”으로 수정하였고 마찬가지로 제3항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 작성·배포 대상을 “화장실”에서 “화장실 등”으로 수정하였습니다.
- 이는 제명 수정에서와 같이 불법촬영 예방 대상 확대 필요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아울러 안 제5조제5항과 제6항에서는 교육감이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실제적인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)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한 검토(안 제5조의2)

- 안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화장실 설치 시 대변기 출입문 상·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
- 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대변기 출입문 상·하단부를 제외하고는, 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8) 보도자료: “안심벨요? 그게 뭔데요?” 공중화장실 ‘안심벨’ 설치·홍보 부족(전북도민일보, 2021.12.6.)

○ 이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나, 개정된 시행령은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환기를 위해 천장과 30cm 이상 떨어트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⁹⁾ 안 제5조의2는 칸막이 상단부는 제외하고 하단부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고, 안 제5조의2제1항에 “대변기 출입문” 이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2681, 2023. 8. 22.)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입법조사관	김한수 02) 2180-8269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9) 5의4.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. 다만,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.